

한국대학태권도연맹 주최 태권도대회 유치 동의안

의안 번호	2016-
----------	-------

제출일자 : 2016. 08. 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1. 제안사유

- 전국 태권도대회 유치로 스포츠메카 거창 홍보
- 관광자원 및 농특산품 판매·홍보 및 숙박·요식업소 특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유치계획

연도별	대 회 명	대회개최 (예정)	참가규모	사업비 (천원)
2017년	2017년 타이페이 유니버시아드 태권도 국가대표 대회	2017.5.6월중 (6일간)	2,200명	150,000

나. 대회개요

대 회 명	2017년 타이페이 유니버시아드 태권도 국가대표 대회
주 최	한국대학태권도연맹
후 원	거창군
일 정	2017. 5. 6월 중 (6일간)
참가규모	총 2,200명 (겨루기 : 60팀/1,500명 품 새 : 35팀/450명 본부임원: 150명 지도자 : 100명)
예 산	150백만원 ----- 25,000천원 x 6일 = 150백만원
예산내용	인건비, 제작비, 진행비, 인쇄비, 회의비, 대회준비비, 숙박비, 홍보비, 장비임대료, 거창군 태권도 발전기금(장학금), 지원비 등

다. 기대효과

- 대한민국 국기인 전국태권도대회 유치로 스포츠메카 거창 홍보
- 관광자원 및 농특산품 판매·홍보 및 숙박·요식업소 특수로
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

3. 참고사항

가.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

- '16. 6. 10 : 2017년 타이페이 유니버시아드 태권도 국가대표 대회
 유치계획(보고)
- '16. 6. 29 : 대회 유치신청서 제출(한국대학태권도연맹)
- '16. 8. 23 : 군의회 주례보고
 (거창군 ⇔ 한국대학태권도연맹 MOU체결)
- '16. 9. 2 : 군의회 임시회(제220회) 일반의안 상정
- '16. 9월 중 : MOU 체결

나. 예산조치

- 2017년도 본 대회유치비 본예산 반영

다. 2017년 타이페이 유니버시아드 파견 태권도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
 개최약정서 : 따로 붙임

한국대학태권도연맹 주최 태권도대회 유치 비용 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비용발생 요인 :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한 예산 지원
- 관련조문
 - 제3조(대회유치금 지급)
 - 제6조(권리와 의무)

2. 비용추계의 결과

- 추계의 결과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6년)	2차년도 (2017년)	3차년도 (2018년)	4차년도 (2019년)	5차년도 (2020년)	합계
총 비용(a - b)			130				130
세출	국비						
	도비						
	군비	0	150	0	0	0	150
	소계(a)	0	150	0	0	0	150
세입	0						
	0						
	소계(b)						

3. 관련 의견

- 대한민국 국기인 전국태권도대회 유치로 스포츠메카 거창 홍보
- 관광자원 및 농특산품 판매·홍보 및 숙박·요식업소 특수로
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

작성자 :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

2017년 타이페이 하계유니버시아드 파견 태권도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 개최 약정서

한국대학태권도연맹(이하 “갑”)과 거창군(이하 “을”)은 “2017 타이페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” 파견 태권도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(이하 “대회”라 한다)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약정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주관하는 “대회”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제반사항과 태권도 활성화 및 저변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을 꾀함은 물론 국기태권도의 발전에 목적이 있다.

제2조(대회개요)

- ① 대회명 : 2017 타이페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파견 태권도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.
- ② 기 간 : 2017년 5,6월 중 ⇒ 6일간
- ③ 장 소 : 거창군 실내체육관
- ④ 주 최 : 한국대학태권도연맹
- ⑤ 주 관 : 한국대학태권도연맹, 거창군태권도협회
- ⑥ 후 원 : 거창군, 거창군의회

제3조(대회유치금 지급)

- ① 대회유치금은 일금:일억오천만원정(₩150,000,000원)으로 한다.
- ②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“을”은 대회유치금을 대회 25일전까지 “갑”의 아래 계좌로 입금한다.
가) 은행명 : 농협 나) 계좌번호 : 356-1146-4724-63
다) 예금주 : 한국대학태권도연맹(최재춘)

제4조(대회유치금의 사용 및 정산)

- ① 대회유치금은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본 대회와 관련된 아래의 경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, 대회완료 후 3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가) 경기장 조성 및 경기에 필요한 제반 비용
나) 한국대학태권도연맹 및 종사자에 대한 제반 비용
다) 홍보에 필요한 제반 비용
- ② 대회완료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전액을 “을”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5조(대회책자)

- ① “갑”이 대회 팸플릿, 포스터, 초청장 등 인쇄물을 제작하며, 제작에 필요한 자료는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제공한다.
- ② 대회책자(팸플릿)의 광고표지 2, 3, 4면은 “갑”이 활용하며, 개최지 “을”의 광고 할애는 10면 이내로 한다.

제6조(권리와 의무)

- ① “갑”과 “을”은 대회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- ② “갑”과 “을”은 대회개최를 위하여 제반사항 및 경기운영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로 상호 적극 협조 한다.
- ③ “갑”은 “대회” 개최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아래 내용에 대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비용을 부담한다.
 - 가) 겨루기 전광판, 경기장 매트, 호구 등 경기장 시설 설치
 - 나) 대회 홍보를 위한 팸플릿, 포스터, 초청장, 현수막 등 대회 선전비
 - 다)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한 운영위원(안내, 급수, 청소, 복사)의 선발 및 배치와 이에 대한 수당 등 제반 경비
 - 라) 대회 기간 중 통신설비 및 사무장비비 등
- ④ “을”은 “대회”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아래 내용에 대하여 “갑”에게 적극 협조 한다.
 - 가) 체육관, 냉·난방, 전기, 음향, 부대시설(사무실, 기자실, 심판휴게실 등) 사용
 - 나) 응급상황에 대비한 앰블런스, 간호사 2명 이상, 비상 구급약품 준비
 - 다) 거창군태권도협회는 대회진행을 보조 할 자원봉사요원(태권도선수)을 지원한다.

제7조(경기장 광고 및 타이틀 실사출력물 부착)

- ① 대회공식(메인타이틀) 및 실사출력물(내·외부 게첩용)은 “갑”이 제작하며, 대회 관련 홍보 실사 출력물(가두, 체육관 홍보, 환영 등)은 거창군태권도협회가 제작하고 제작비용은 각각 지급한다.

제8조(약정의 해석 및 관할 법원)

- ① “본 약정”의 해석 및 이행을 포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.
- ② “본 약정” 또는 “본 약정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상호 합의하여 해결한다.
- ③ 제2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해결한다. 확정된 중재는 “갑”과 “을”에게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“갑”과 “을”은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.

“본 약정”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2부를 작성하고 “갑”과 “을”이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. 8. .

(갑)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134-28
리온스포츠상가 B동 1층 1호실

(을)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

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 _____

거창군수 _____